

## 진료 X-선 위해 방어에 기술적인 문제질의

협회에서는 진료 X-선 위해 방어에 기술적인 문제를 국립보건연구원에 협의하였던 바(의무 1922 1185. 1970. 6. 7일자) 아래와 같이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훈령—6338, 1970. 7. 15일자)회시가 왔으므로 그 전문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엑스선 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엑스선실에 대하여 엑스선의 누설로 야기되는 장애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야하는 것이다.

2)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의 전면 즉, 천정, 바닥, 벽등에 대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준은 제 1항에서 표시한 허용누설 선량을 이하가 되도록 물질의 선택과 두께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제 1항의 기준은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방어시설의 주간사용 연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방어시설에서 누설되는 엑스선의 허용선량을 정하고 있다. 매주 연사용시간이라 함은 엑스선 장치가 진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의 주간누계를 말하며 1주는 6일을 원칙으로 하나 개업의의 경우는 7일로 한다. 엑스선 장치가 진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이라 함은 엑스선의 발생 및 발생을 위하여 장치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4) 이 기준에서 표시된 선량은 엑스선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최대허용 주선량은 100밀리 렌트겐으로 그 한계를 정한 것으로서 누설되어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는 이 선량은 장치가 설치된 실의 방어벽 외부 표면에서 측정된 선량율이다.

5) 그러나 엑스선 장치를 일정한 장소에서 설치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여 촬영하는 결핵 엑스선 검진등에 있어서는 검진기간동안 예외로 할 수 있으나 방어 조치는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6) 엑스선 장치를 일정한 장소에서 설치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용 최대 관전압 60.K.V.P 사용관전류 10m.A이하(휴대용 또는 치과용)의 소용량 진단용일 경우에는 제 1항에 의한 방어 설비를 한 엑스선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 진료실 전체를 엑스선실로 간주하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어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단, 이때에 진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당 최대허용선량을 역시 100밀리렌트겐으로 그 기준을 둔다.

7) 기존 건물의 천정, 벽, 바닥등을 방어 시설로 간주하며 측정결과 선량율의 제 1항의 규정이 하일 경우에는 이 진료실에 별도 방어 시설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진료실 벽등의 외부면에서 측정된 선량율이 제 1항의 규정을 초과할 때는 그 규정된 선량을 이하가 되도록 추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8) 방어 시설을 할때는 물질의 종류, 사용관전압 및 관전류와 진료 환자수에 따르는 사용시간등에 의하여 설계한다.

9) 엑스선량 측정에 있어서는 표준 교정된 경밀급 선량을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상 전 8,9항의 기술적 문제는 특수 훈련을 받은자만이 실시할 수 있다.

